

국가유산수리업

문화재수리업 -> 국가유산수리업 명칭변경 (24.05.17부터 시행)

■ 업무내용

국가유산의 보수, 복원,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업무

종합국가유산수리업

- 보수단청업

전문국가유산수리업

- 조경업, 보존과학업, 식물보호업, 단청공사업, 목공사업, 석공사업, 번화공사업, 미장공사업, 온돌공사업

1. 자본금

종합	전문
법인/개인 2억원 이상	법인 / 개인 5천만원 이상

※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)으로
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.

※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.

2. 기술능력

종합업종	기술자격
보수단청업	<p>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</p> <p>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한식목공(대목수) 1명 과 한식미장공, 번화와공, 화공, 드잡이공, 한식석공,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</p>

전문업종	기술자격
조경업	<p>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조경기술자 1명 이상</p> <p>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조경공 1명 이상</p>
보존과학업	<p>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</p> <p>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, 세척공,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</p>
식물보호업	<p>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</p> <p>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식물보호공 1명 이상</p>
단청공사업	<p>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단청기술자 1명 이상</p> <p>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화공 1명 이상</p>
목공사업	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
석공사업	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쌔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
번화공사업	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번화와공 2명 이상
미장공사업	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한식미장공 2명 이상
온돌공사업	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온돌공 2명 이상

※ 법인 / 개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

업종	기술자격
국가유산 감리업	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, 보수기술자, 단청기술자, 조경기술자, 보존과학기술자,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

※ 법인 / 개인 자본금 없는 업종

업종	기술자격
국가유산 실측설계업	[국가유산수리기술자] :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[국가유산수리기능자] :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

1.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
2.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들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, 신체 · 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, 해외 유학 · 이민, 학교 ·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.
3.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, 신고,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.
다만,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.

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자본금	신규등록 시 예치금
국가유산수리업	종합 : 2억원 전문 : 5천만원 감리업 : 5천만원	종합국가유산수리업 : 40,000,000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: 10,000,000원 이상 국가유산감리업 : 10,000,000원 이상

※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

4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※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.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